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 기관 업무협약서(안)

일자리지원 기관인 "서대문구", 호텔 운영체인 "그랜드 힐튼 서울"과 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협약 기업 · 기관"이라 한다)는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 기업 · 기관"은 긴밀한 협력으로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 기업 ·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서대문구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호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5060 퇴직자 등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기업·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기업·기관" 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협약 기업·기관" 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서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구청장 문 석 진	**총지배인 번하드 브랜더**	**관 장 박 정 숙**
_____	_____	_____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 기관 업무협약서(안)

호텔 운영체인 "그랜드 힐튼 서울", 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일자리지원 기관인 "서대문구"(이하 "협약 기업 · 기관"이라 한다)는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 기업 · 기관"은 긴밀한 협력으로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 기업 ·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5060 퇴직자 등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3. 서대문구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호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기업·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기업·기관" 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협약 기업·기관" 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20일

그랜드 힐튼 서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지배인 번하드 브랜더	**관 장 박 정 숙**	**구청장 문 석 진**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 기관 업무협약서(안)

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지원 기관인 "서대문구"와 호텔 운영체인 "그랜드 힐튼 서울"(이하 "협약 기업 · 기관"이라 한다)은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 기업 · 기관"은 긴밀한 협력으로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 기업 ·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2. 서대문구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호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5060 퇴직자 등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기업·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기업·기관" 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협약 기업·기관" 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20일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서울**
관 장 박 정 숙	**구청장 문 석 진**	**총지배인 번하드 브랜더**